

인천지방법원 2018. 2. 22 선고 2017나6481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(원인무효)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18. 2. 22 선고 2017나64814 판결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. 8. 30 선고 2016가단23177 판결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B

변론 종결 2018. 1. 25.

판결 선고 2018. 2. 22.

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. 8. 30. 선고 2016가단23177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. 9. 2. 접수 제930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3	13	원고가	원고 A이	5	9	장소	영업장소
3	14	원고를	원고들을	5	18	원고의	원고 A의
4	18	원고의	원고 A의	5	19	원고가	원고 A이
4	18	채무양수	채무인수	6	1	새겨진	찍힌
5	4	원고와	피고와	6	17	근저당권은	근저당권설정등기는

2.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[제1심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고 있다. 가집행선고에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본안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(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다56053 판결 참조),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.]

재판장판사박준민

판사김지영

판사류일건

별지